7-2-3 행정신고 업무지원/출입국관리법 신고업무/신고착오 사항 정정 지원

사증발급인증서 관련 상담

○ 상담 개요

우즈벡인 A씨는 2019년 2월 7일 사증발급인정서 상의 여권번호와 이름이 오기되어 한국 입국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니 사증발급인정서 정보가 정정되어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우즈벡인 A씨는 2014년 4월 23일 E-9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 후 재고용 연장하여 4년 10개월간 근무하고 한국에 재입국하여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본인의 한국어 실력으로는 특별한국어시험으로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함
-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 중 OO대학교 조선CAD응용학과(뿌리과정)에 입학하여 재입국하기로 결정하고 경남 거제 ○○대학교에 입학 절차를 마치고 2019.01.15. 본국으로 출국함
- 2019.02.07. 우즈벡인 A씨는 비자 발급을 위해 OO대학교에서 발급 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함. 사증발급인정서에는 한국에서 사용하던 구 여권의 여권번호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우즈벡에서 재발급 받은 여권의 여권번호와 이름이 불일치하여 비자 발급이 안된다고 함
- OO대학교 대외교류처 담당자에게 우즈벡인 A씨의 상황을 설명하고 재발급 여권 사본을 OO대학교 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함. OO대학교 담당자는 관련 내용을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하고 다시 연락해주기로 함
- 2019.02.11. OO대학교 담당자는 A씨의 재발급 여권번호 및 성을 추가한 풀네임을 기재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여 보내주겠다고 함
- 2019.02.12. 우즈벡인 A씨는 새로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가지고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했지만 OO대학교에서 대사관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우즈벡인 A씨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반려함

- OO대학교 담당자에게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직접 연락할 것을 요청함
- OO대학교에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보냈고, 2019.02.20. A씨는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기 위한 인터뷰를 함. 대사관 담당자는 A씨에게 우즈벡에는 조선업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왜 한국에서 조선업 관련 공부를 하려는지 질문하였고, A씨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함. A씨는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인터뷰 시 본인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문의함
- OO대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알카에다 무장 조직원들이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서 비자발급 인터뷰가 강화되었고, 일부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고 함. A씨는 조선CAD 응용 뿌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고, 관련 특화기술(용접, 소성가공 등) 자격증을 취득하면 뿌리산업에 등록된 사업장에 E-7자격으로 입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터뷰 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함
- 2019.02.27. A씨는 대사관의 인터뷰를 무사히 잘 마쳤고, 비자발급 사실을 OO대학교 담당자에게도 알려줌. 대학교는 2019.02.28.부터 정규 수업을 시작하니 A씨에게 최대한 빨리 한국에 입국할 것을 안내함
- 우즈벡인 A씨는 2019.03.05.에 재입국하여 현재 OO대학교에서 조선CAD 응용 뿌리과정 1학년에 입학하여 충실히 유학생활을 하고 있고, 2년의 전문교육 과정 이수 후 학교와 연계된 뿌리기업에 취업할 예정이라고 함

2. 상담 포인트

- 여권 발급 시 아버지 이름 추가하여 변경(2019.01.01. 시행)

· 우즈벡에서는 원래 이름을 지을 때 「성-이름-아버지 이름」이 본인 이름으로 사용함

· 우즈벡 내에서 사용하는 신분증에는 성-이름-아버지 이름 순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여권에는 성, 이름만 기재되어 있음

· 이 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우즈벡에서는 2019.01.01. 이후 발급된 여권에는 성, 이름, 아버지 이름 모두를 기재하도록 일괄 변경함

· 근로자들이 본국에 출국 후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여권 재발급 후 입국하면 변경된 여권에 맞게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함

· 이전 여권은 사용 불가한 것은 아니고, 우즈벡 국내에서만 신분증 대신으로 사용 가능함

- 변경 여권 사진

2019.01.01. 이전 우즈벡 여권 표지	**2019.01.01. 이후 우즈벡 여권 표지**
2019.01.01. 이전 우즈벡 여권 내부	**2019.01.01. 이후 우즈벡 여권 내부**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는 국내 7개 대학을 선정하여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양성대학은 해당 유학생을 대상으로 뿌리기술 전문교육 과정을 실시 후 뿌리기업에 기술인력을 제공함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에서 배출한 인력들은 뿌리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단순노무인력이 아닌 숙련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임

· 졸업생들은 뿌리기술 기량검증센터의 테스트를 통과 후 뿌리기업에 등록된 회사에 취업을 하면 E-7비자 취득이 가능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아래 참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 뿌리기술 전문교육 과정 입학 제출 서류

· 우즈벡인 A씨가 유학 중인 OO대학교의 조선CAD응용학과 뿌리기술 전문교육 입학 제출 서류임

NO	제출서류
1	입학 지원서 (본교 서식)
2	자기소개서 및 유학계획서 (본교 서식)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학력입증서류 (아래 중 택일) 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 ②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영사 확인서 ③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보고서 (중국 학력·학위취득자에 한함) 성적증명서
4	신분증 사본(본인, 부모 모두)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재정 관련 증빙서류 -학생명의 또는 재정보증인 : 은행잔고증명서 원본(1 개월 이상 예치한 18,000$이상) -부모의 재직 및 수입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과세증명서
7	여권 사본
8	TOPIK 3 급 이상 성적증명서 (뿌리과정 지원자는 2 급 이상 성적증명서)
9	외국인등록증 사본
10	증명사진 5 장 (3.5cmX4.5cm)
11	건강검진표(결핵, B 형간염)

- 뿌리기술 전문교육 과정 및 뿌리산업 취업 절차

· 우즈벡인 A가 유학 중인 OO대학교의 조선CAD응용학과 뿌리기술 전문교육 과정절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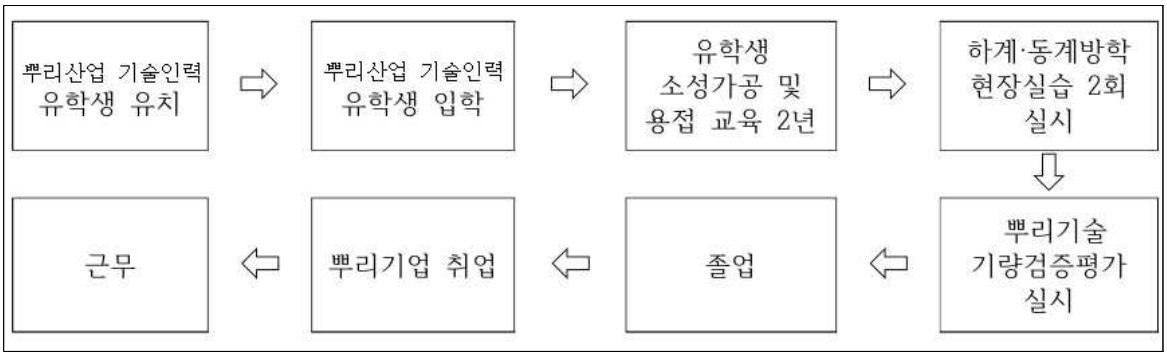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신청서에 입국의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국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에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 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문자와 기호를 함께 적고, 근무처, 연수장소, 학교명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그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9조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9조의4를 준용한다.

④주소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에따른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⑦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①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